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수화통역센터를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등에게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통역업무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 등 미래지향적 복지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목적을 규정함(제1조)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등록 청각·언어 장애인을 이용대상으로 규정함(제3조)

- 사업내용은 청각 언어 장애인 상담지도, 출장 수화 통역서비스 제공,
기타 수화교육과 보급사업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함 (제4조)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9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3, 팩스 032-440-8764, 이메일 hy01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수화통역센터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화통역센터를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등록 청각·언어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청각·언어장애 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2. 기타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제4조(사업내용) 수화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청각 언어 장애인 상담지도: 개별상담(접수, 의료, 직업, 일반상담) 및 사후관리
2. 출장 수화 통역서비스 제공: 각종 민원해결(법률, 취업, 관공서이용) 가족문제상담,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출장서비스
3. 기타 예산범위내에서 수화교육과 보급사업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는 인천광역시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인력은 센터장 1인과 수화통역사 4인을 포함한 5명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센터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항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업무)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수화통역사는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및 통역업무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센터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설이용자(또는 지역 장애인대표) 또는 시설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2. 법인(위탁 및 운영법인)의 대표이사
3. 관계공무원
4.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8조(위원장의 선출과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이용자의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제22조(조례)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장애인복지법 -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사회보장기본법 - 제26조(협약 및 조정)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수화통역센터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수화통역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지원으로 연간 390백만원 소요됨

나. 추계 결과

(단위:천원)

사 업 명	계	인건비	관리운영비	비고
2015년 수화통역센터운영	389,504	383,882	5,622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불입

4. 작성자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김 중 권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출	수화통역센터 운영	389,504	490,834	515,376	541,150	568,523	2,505,387
	소 계	389,504	490,834	515,376	541,150	568,523	2,505,387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일반회계	389,504	490,834	515,376	541,150	568,523	2,505,387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